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규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546
------------	-------

발의연월일 : 2018. 12. 13.

발의자 : 이규희 · 이후삼 · 윤후덕
황희 · 박완주 · 송영길
윤일규 · 강훈식 · 윤관석
박홍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등이 업무의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사업시행자 등에 대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의 행정조사 실시요건이 포괄적·추상적이어서 조사권한의 남용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영업소에 출입하여 시행하는 조사·검사의 근거를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없이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고, 자료제출 요구에 따른 제출 기한 등이 통일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등록기준 미달 등의 사유로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이를 고의로 누락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계약해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문제

가 있음.

이에 행정조사 실시 요건을 조사 대상자의 업무 현황 또는 법률의 위반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으로 구체화하고, 현장 출입 조사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며, 자료제출 기한(15일 이내) 및 조사결과의 통지 기한(30일 이내) 등을 통일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행정조사 제도를 합리화하는 한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처분 등을 한 시·도지사로 하여금 그 사실을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사업시행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3항, 제107조제3항·제4항, 제110조제2항, 제111조제2항·제3항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3항 중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을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처분 등을 한”으로 한다.

제107조제1항 중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하여 업무의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 수행 현황 또는 이 법의 위반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하여”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업무에 관한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명령을 받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고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 등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10조제2항 중 “감독상 필요한”을 “협회의 업무 수행 현황 또는 이 법의 위반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으로, “협회의 업무에 대한 조

사·검사와 그 밖에 협회의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의 명령에 따른 보고, 자료 제출의 기한 및 조사·검사 등 결과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107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111조제2항 중 “때에는”을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으로, “철거업자·설계자”를 “설계자”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따라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의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영업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이 법의 위반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토지등소유자,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인 간의 분쟁이 발생된 경우
3. 시·도조례로 정하는 경우

③ 제2항의 명령에 따른 보고, 자료 제출의 기한 및 조사·검사 등 결과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107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113조제3항 중 “제111조제3항”을 “제107조제4항”으로, “공무원”을

“경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등의 적용례) 제10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록취소처분 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조사·감독 등의 적용례) 제107조제1항·제3항·제4항, 제110조제2항·제3항, 제111조제2항·제3항 및 제1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사, 감독 또는 자료의 제출 요구 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6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등) ①·②(생략) ③ <u>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자체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u> ④·⑤(생략)	제106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등) ①·②(현행과 같음) ③ <u>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처분 등을 한-----</u> ----- ----- -----. ④·⑤(현행과 같음)
제107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u>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하여 업무의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의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영업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u> ②(생략) <u><신설></u>	제107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조사 등) ① ----- ----- <u>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 수행 현황 또는 이 법의 위반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하여-----</u> ----- ----- -----. ②(현행과 같음) ③ <u>제1항에 따라 업무에 관한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u>

	<p><u>명령을 받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고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u></p> <p><u>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 등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u></p>
<p><u><신 설></u></p> <p>제110조(협회의 업무 및 감독) ① (생 략)</p> <p><u>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협회에게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협회의 업무에 대한 조사·검사와 그 밖에 협회의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u><신 설></u></p>	<p>제110조(협회의 업무 및 감독) ① (현행과 같음)</p> <p><u>② ----- 협회의 업무 수행 현황 또는 이 법의 위반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u></p> <p><u>③ 제2항의 명령에 따른 보고, 자료 제출의 기한 및 조사·검사 등 결과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107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 한다.</u></p>
<p>제111조(자료의 제출 등) ① (생 략)</p>	<p>제111조(자료의 제출 등) ① (현행과 같음)</p>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비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추진위원회·사업시행자·정비사업전문 관리업자·철거업자·설계자 및 시공자 등 이 법에 따른 업무를 하는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따라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조사하는 공무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조사 일시·목적 등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② -----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설계자-----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의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영업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이 법의 위반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토지등소유자,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인 간의 분쟁이 발생된 경우

3. 시·도조례로 정하는 경우

③ 제2항의 명령에 따른 보고, 자료 제출의 기한 및 조사·검사 등 결과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107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 한다.

제113조(감독) ① · ② (생 략)	제113조(감독) ① · ② (현행과 같 음)
③ <u>제111조제3항</u> 은 제2항의 정 비사업 현장조사를 하는 <u>공무 원</u> 에 대하여도 준용한다.	③ <u>제107조제4항</u> ----- -----경우-----.